**위메이드플레이 윤리규범**

**우리의 약속**

**1. 우리는 위메이드플레이의 해야 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10가치 원칙을 준수합니다.**

1) 의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원칙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원칙이 잘 정의되어야 기업이 흔들리거나 표류하지 않고 핵심가치 아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 상반기 워크샵을 통해서 ‘위메이드플레이의 해야 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원칙’을 다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위메이드플레이를 보다 좋은 기업이 되게 하고 좋은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10가지 원칙>

* 1. 우리는 인사를 잘 한다.
  2. 우리는 초기의 뜨거운 열정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일에 열정을 기울인다.
  3.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한다.
  4. 우리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키기로 한 약속은 꼭 지킨다.
  5. 우리는 변화를 즐기고 새로운 것에 늘 도전한다.
  6.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리고 배려한다.
  7. 우리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너쉽을 갖는다.
  8.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
  9.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10.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유머 그리고 위트를 항상 갖는다.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원칙>

* 1. 위메이드플레이는 하나의 팀이다. 개인 이기주의 및 팀 이기주의(Silo)는 버리자.
  2.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일하자.
  3. 이해하지 못한 것에 동의하지 말자.
  4. 동료를 모함하거나 헐뜯지 말자.
  5. 옳지 않은 것, 그른 것에 "예(Yes)" 하지 말자.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그 순간으로 인해 모두가 불편해질 수 있다.
  6. 자기 관리를 (정신, 건강, 자기 계발) 소홀히 하지 말자.
  7. 나쁜 일과 문제를 숨기려 하지 말자. 나쁜 일과 문제는 결국에는 드러난다.
  8. 지각하지 말자. 나쁜 근태는 나태함과 게으름의 출발점이다.
  9. 생각 없이 아마추어같이 일하지 말자. 아마추어 같은 자세와 태도는 아마추어 같은 서비스를 낳는다.
  10. 정치하지 말자. 정치할 시간에 동료를 위해 착한 일 하나 더하자.

**2. 우리는 회사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1) 의미

구성원 개인이 관리하는 회사의 정보들은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영의 제1자원이며, 회사의 흥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회사의 기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할 경우 고객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2) 피하여야 할 일

1. 회사의 민감한 정보에 관하여 엘리베이터나 식당 등의 공공 장소에서 이야기 하는 행위
2. 구성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3.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업무상 취득한 사업파트너의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5. 회사의 기밀사항, 기술에 대한 사항,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및 업무상의 내부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6. 회사에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7. 회사를 퇴사할 때에도 회사의 영업/재무/인사/기술 등에 관한 정보, 계획,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우리는 업무 및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의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적인 관계가 우선시 됨으로 인해 회사보다는 이해당사자의 득실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며, 결국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2) 피하여야 할 일

1.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2.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3. 이해관계자에게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 등을 청탁하거나 대출 보증을 청탁하거나 제의를 수락하는 행위
4.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자산의 임차나 담보를 제공 받는 행위
5. 납품업체,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할인이나 기타의 혜택을 받는 행위
6. 구성원의 가족, 친인척이 회사 및 회사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
7.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8.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9.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쟁사, 고객,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취임하거나 자문업무 및 기타 사업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10. 계약업무, 출자회사관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부서의 구성원이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3) 예외 인정

1. 구성원의 가족, 친인척이 회사 및 회사거래처와 거래할 경우 구성원의 직무 및 직위로 인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회사에 신고한 경우
2. 협력업체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회사의 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법과 취업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경험과 관계없는 일을 근무 시간외에 하는 경우

**4.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1) 의미

만약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받게 될 경우 우리의 행동은 업무추진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 할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고 결국 회사의 이익과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줄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2) 피하여야 할 일

1. 구성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
2. 구성원의 가족, 친인척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본인에게 전달 되는 경우
3. 상급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하급자에게 주는 경우
4. 하급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
5.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동등 직위간 주고 받는 경우

3) 예외 인정

1. 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행사 기념품으로 그 가격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넘지 않는 물품
2.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의 경조금
3.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되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넘지 않는 화분이나 화환

**5.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의미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 한다면 당장에는 금전적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회사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 피하여야 할 일

1. 구성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2. 구성원의 친인척, 친구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예외 인정

1. 설, 추석 등 명절 시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으로 상대방이 감사의 정을 느끼는 정도의 물품
2.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의 경조금 또는 경조 선물
3.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되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넘지 않는 화분이나 화환

**6.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1) 의미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 합리적이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의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서로간에 부담을 느껴서 업무를 원활하게 협의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결국 회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 피하여야 할 일

1. 이해관계자에게 룸살롱, 단란주점, 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호화 사치업소 및 퇴폐업소에서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2. 이해관계자에게 교통, 숙박, 관광안내, 관람권,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3. 이해관계자에게 골프접대(부킹 포함)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4.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라 하더라도 향응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거나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

3) 예외 인정

1.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식사 등의 편의
2. 본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의 장이 업무협조를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경우

**7. 우리는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1) 의미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성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의 조작·변조는 상급관리자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으며 특히,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세법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주주 등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 되어야 합니다.

2) 피하여야 할 일

1. 상급관리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행위
2. 회사 내의 경영진 또는 회사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3. 직접적인 허위 보고 이외에도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8. 우리는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1) 의미

회사의 유·무형 재산은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원동력이므로 개인재산을 다루는 것 이상으로 소중히 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피하여야 할 일

1. 회사의 재산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대여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을 고가로 구입·차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3.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회사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9.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준수하고 다른 구성원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의미

내제되어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문제점을 덮어두기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신고행동을 회사를 위한 충성스럽고 용감한 행동으로 정의하고 내부신고자를 조직을 위한 협력자로 보는 문화를 형성하여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 신고대상 행위

1.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기타 외부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3) 신고방법

1. 온라인 제보 센터(이메일: [ethics@sundaytoz.com](mailto:ethics@sundaytoz.com))를 통해 신고

4)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10. 회사는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과 신분을 보장합니다.**

1) 의미

구성원의 내부신고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회사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준 소중한 자산이며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익명성을 유지하고 신고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비밀을 보장 합니다.

2) 신고자 신분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신고자 추적행위 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등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노출자 보직관리

1.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행위 일체를 금지합니다.
2. 불이익 예상 시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합니다.

5)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